

검 토 보 고 서

■ 조례명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청문)를 삭제함.

■ 개정사유

-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5조(청문)을 삭제함.

■ 검토결과(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등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청문)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u>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u> <u>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u> <u>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u> <u>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u> <u>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u> <u>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u> <u>로 본다.</u></p>	<p>(삭 제)</p>